

개인형퇴직연금(IRP) 과세 환급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김수성* · 차명기**

목	차
I. 서 론	265
II.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요와 현황 및 세제 검토	268
1. 퇴직연금제도와 IRP 제도의 현황	
2. 퇴직연금의 유형과 최근의 추세	
3. 개인형퇴직연금의 개요 및 특징	
4. 개인형퇴직연금의 종류와 세제 검토	
III. 개인형퇴직연금(IRP) 시행에 따른 과세상의 문제점	281
1. 가입단계의 문제점	
2. 운용단계의 문제점	
3. 급부단계의 문제점	
IV. 개인형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289
1. IRP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방안	
2. IRP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	
3. IRP 가입 유도를 위한 세제 개선사항	
V. 결 론	300

* 주저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세무학박사

** 교신저자 :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세무사(AICPA)

*** 투고일 : 2015. 5. 1. 1차수정일 : 2015. 6. 10. 게재확정일 : 2015. 6. 25.

< 국문초록 >

개인형퇴직연금의 취지는 근로자가 조기에 회사를 퇴직하거나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 노후를 대비하는 퇴직연금의 대체수단으로 IRP(IRP : Individual Retirement Plan, 이하 'IRP'라 함)에 가입하여 퇴직연금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IRP에 가입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시에 과세되던 것이 IRP계좌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시점까지 소득과세가 이연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상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IRP 제도는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문제와 환급처리에 대한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어 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의무 부담과 세액환급 및 정산의 조세협력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발생원인은 IRP 제도 가입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의 신고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환급해주는 과세행정상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IRP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점검해보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을 IRP 계좌에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현행법을 수정하여야 한다. 퇴직 후 60일 이내에만 IRP에 가입하던 것을 퇴직시점에 IRP 가입 여부를 퇴직 전에 사전 결정토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퇴직금을 지급하는 민간기업이나 특수직역연금공단이 원천징수의무자로 되어 있으나 이를 수정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셋째, IRP 계좌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도인출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IRP 제도를 시행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의 신고의무와 환급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어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공적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개인연금의 하나인 IRP 제도를 연금제도의 큰 틀 안에서 살펴봄으로써 제도적인 문제점과 세계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주제어** : 개인형퇴직연금, IRP, 퇴직연금, 공적연금, 퇴직소득, 원천징수
 확정급부형, 확정기여형

I. 서론

개인형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lan, 이하 ‘IRP’라 함)은 은퇴 후 노후의 생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의 노후생활의 대비책은 저축 및 연금 등의 방법의 통하여 준비하게 되는데, 최근 IRP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¹⁾ 최근 연봉제 및 성과급제 확대 등 근로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8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확대되어 왔으며, 2005년 12월 1일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통산장치로 IRP가 자리매김하고 있다.

과거에 있었던 개인퇴직계좌(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이하 ‘IRA’라 함)가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전환된바, IRP의 취지가 조기에 회사를 퇴직한 사람이나 중간정산을 받은 직장인도 노후를 대비한 퇴직연금의 대체수단으로 IRP에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퇴직연금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IRP에 가입하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연금이 인출되는 시점까지 이연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IRP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의 문제와 환급의 문제가 발생하는바, DB형의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신고와 환급의 부담은 커지게 된다.²⁾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이 퇴직 후 IRP에 가입하였을 경우에 원천징수기관이 공단으로 계좌이연신고서를 보내면, 공단은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1)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개인퇴직계좌’라고 하는 용어가 개정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퇴직계좌(IRA), 개인형퇴직연금, IRP로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자 한다.

2)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급여수준(근속연수 × 30일분 이상의 평균급여)이 사전에 결정되는 급여제도이다.

본인에게 환급하여 주고, 그 사항을 다시 국세청에 신고하고 환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DB형의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환급의 문제는 이외에도 특수직역연금의 공단과 그 밖의 민간기업의 사업장에서도 공히 해당된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제도의 급여는 일시금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을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반면, 특수직역연금은 연금과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77조에서는 반환일시금의 수급요건을 정하고 있는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IRP 시행에 있어서 퇴직금을 전액 IRP에 전입하지 않고 80% 이상의 금액만을 전입하도록 하였으나, 이와 같은 문제는 그나마 법 개정으로 전액 이체하도록 개정되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으나 60일이라는 문구가 존재하고 있어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토대로 IRP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도입, 운용, 급여단계로 점검해 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당초 근로자가 퇴직시점에 IRP 가입 여부를 미리 결정토록 하고 IRP에 가입할 금액을 결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시금 중에서 IRP에 가입할 금액을 사전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은 환급의 문제와 정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둘째,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퇴직금을 지급한 민간기업이나 특수직역연금공단이 현행법상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되어 있으나, 이를 수정하여 52개의 퇴직연금사업자로 전환하고자 한다. 추가로 IRP 가입에 대한 강제규정을 신설하고, IRP에 대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되도록 IRP 가입 후 중도 해지시에는 개인연금과 같은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개인형퇴직연금 하나만을 살펴본 선행연구와는 달리³⁾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통산장치의 일종인 IRP 제도를 하나의 연금제도의 큰 틀 안에서 살펴봄으로서 제도적인 문제점과 세계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의 현황 및 퇴직 관련한 세제를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개인형퇴직연금 제도 시행에 따른 과세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Ⅳ장에서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 및 세제지원 방안을 동시에 살펴보고 현행 세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 3)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크게 퇴직연금 세제와 개인퇴직계좌인 IRA의 세제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다. 먼저,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에 대한 연구로는, 김수성·성종훈(2014)과 김진수·김재진(2007)은 퇴직연금 과세제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최형준(2009)은 실무적인 입장에서 퇴직연금소득 과세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외에 문성훈(2010)은 펀드 및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반면, 개인형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에 대한 세제의 연구로는, 류건식·이상우(2009)가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박여영(2010)은 IRA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제혜택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진섭(2010)은 개인퇴직계좌(IRA)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개인연금과의 비교를 통해 IRA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밖에 문성훈·김수성(2014)은 고령화 사회의 연금 수급 선택 유인을 위한 연금소득 과세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를 하였다[김수성·성종훈, “퇴직소득 세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4권 제2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4, 73~108면; 김진수·김재진, 『퇴직연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 최형준, 『퇴직연금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2009; 문성훈, “펀드 및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 개선방안”, 2010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 류건식·이상우,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KIRI Weekly, 보험연구원, 2009; 박여영, 『IRA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강화 필요』,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2010; 이진섭, 『개인형퇴직연금(IRA) 활성화를 위한 방안』,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2010; 이진섭, 『개인연금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IRA 개선방안』,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2010; 문성훈·김수성, “고령화 사회의 연금 수급 선택 유인을 위한 연금소득 과세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제15권 제6호, 한국세무학회, 2014, 143~182면].

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자 하였다.

Ⅱ.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요와 현황 및 세제 검토

1. 퇴직연금제도와 IRP 제도의 현황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 제도 시행 이후 양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매년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2배씩의 성장 추세를 시현하고 있다.⁴⁾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2014년 말 기준으로 107조 658억원으로 집계되어, 도입된 지 9년 만에 100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다. 2013년 말에 84조 2,996억원에 비해 22조 768억원이 증가한 수치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⁵⁾ 전면개정이 이루어진 2011년을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적립금 증가폭 중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연도별 적립금 증가폭은 2012년에는 17.4조원이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17조원이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22.8조원이 증가하였다.

퇴직연금 도입 총사업장 수는 전체 사업장 1,687,476개소 중에서 275,547개소에 해당되며, 이 중 DC형을 단독으로 도입한 사업장은 152,904개소(5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⁶⁾ IRP를 도입한 사업장 수는

4) '09.1월(6조 6,844억원) → '10.1월(14조 6,788억원) → '11.1월(30조 3,066억원) → '12.1월(49조 9,851억원) → '12.12월(67조 3,458억원) → '13.12월(84조 2,996억원) → '14.12월(107조685억원)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전부개정)

6)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은 기업이 정해진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자기 책임하에 운용한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이다.

32,046개소로⁷⁾ 전체 사업장 대비 퇴직연금 도입율이 16.0%에 해당된다. 2014년도 말 시점의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275,547개소이다. DB를 단독으로 도입한 곳은 83,643개소이며, DB형과 DC형을 동시에 도입한 곳은 6,954개소이며, DC형을 단독으로 도입한 곳은 152,904개소이며, 기업형 IRP를 도입한 곳은 32,046개소이다.

퇴직연금 총 가입자 수는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535만명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1,016만명 대비 퇴직연금가입률은 46.3%이다. 이 중 DB형 가입자가 3,149천명(58.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 수가 많은 대기업들이 DB형 또는 DB & DC형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에 기인한다. 반면 DC형은 2,119천명으로 3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형 IRP는 85천명으로 1.60%의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2014년도 말 시점의 퇴직연금 총 가입자 수는 5,353천명이며, DB형에 가입한 사람은 3,149천명이며, DC형에 가입한 사람은 2,119천명이다. 반면, 기업형 IRP에 가입한 사람은 85천명에 그치고 있다. 적립금 잔액은 총 107조 685억원의 금액으로 권역별로 살펴볼 때 은행권역은 52조 9,781억원으로 가장 높은 적립금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험권역과 증권권역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도 말 시점의 금융권역별 적립총액은 1,070,685억원이다. 은행은 529,781억원이며, 생명보험은 277,733억원이며, 손해보험은 74,520억원이며, 증권회사 등은 188,652억원이다. 제도 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DB형이 75조 5,277억원으로 70.6%를 차지하고 있고, DC형은 23조 2,782

7) IRP는 크게 ‘기업형 IRP’와 ‘개인형 IRP’로 나뉜다. 이 중 흔히 말하는 IRP는 ‘개인형 IRP’를 말한다. 개인형 IRP는 퇴직연금 개시 연령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개인이 퇴직 일시금을 받을 때 지속적으로 적립·운용할 수 있는 개인계좌이다. 대부분 IRP는 금융기관인 은행·보험·증권회사 등에서 취급하며, 확정기여형(DC)과 같이 개인이 운용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식형 또는 채권형 펀드나 원리금 보장형 상품 등 펀드 변경이 자유롭다. 개인형 IRP는 직장 이동 등의 경우도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2015년 1월부터 근로자 추가납입액에 대해 3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다.

억원이며, 개인형 IRP는 7조 5,358억원, 기업형 IRP는 7,268억원 순(順)이며, 유형별 적립금액 기준으로 DB형의 비중이 가장 높고 DC형, 개인형 IRP, 기업형 IRP 순(順)을 보이고 있다.

2. 퇴직연금의 유형과 최근의 추세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기업형퇴직연금제도도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분류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DB)의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사용자가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근로자는 퇴직시점에 법정퇴직금 수준 이상으로 정해진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회사책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확정기여형(DC)의 사용자는 근로자 연간 급여총액의 1/12 이상을 해마다 근로자의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시점에 적립금 +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근로자책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 이직·퇴직시 퇴직급여를 수령하여 쌓아 두고 계속해서 운용하게 되며,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 전용계좌를 말한다. 최근 퇴직연금 적립금이 크게 증가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고령화가 급격히 진전됨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점에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도 퇴직연금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제도 및 개선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락과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가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노사를 비롯한 전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정부는 2014년 8월에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수급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의 하나로 퇴직연금 단일화 및 가입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한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 이외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여 이를 강화

하고 있다.⁸⁾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16년부터는 종업원이 300인 이상 되는 사업체에 대하여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자 단계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2015년 7월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여 그간 퇴직연금 가입이 다소 저조했던 종업원이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사업체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확대로 인하여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의 비중은 크게 늘어나고, 세제혜택의 강화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 또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IRP 세제 지원을 위해 2015년 세법 개정 전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하여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허용하였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기존 400만원과 퇴직연금 추가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를 300만원으로 별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0만원의 12%인 84만원이 된다.

3. 개인형퇴직연금의 개요 및 특징

가.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요

개인형퇴직연금이란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퇴직급여(명예퇴직수당 포함)를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DC형 퇴직연금 또는 IRP에 이체하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에 입금된 퇴직급여액은 이직시에 과세하지 않고 실제 은퇴시점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시에 과세하는 제도이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직장을 이전할 때 받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

8)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전환을 의무화하게 된다. 2015년 7월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며, 퇴직금 지급시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 대상이 된다.

면서 자기 명의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훗날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빈번한 직장 이동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연봉제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최근 직장 이동이 빈번히 발생하여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5~6년에 불과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 및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금을 계속하여 적립 또는 통산하여 은퇴 후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가입자격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토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기업에는 기업형 IRP 도입을 허용하였다.⁹⁾ IRP의 운용은 DC형과 유사하며, 운용 수익과 손실의 책임은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된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IRP에 적립할지 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점은 개인이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과 유사하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가입자격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며 세법상 일정한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되나 IRP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자 만이 가입되며 적립금의 운용이나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IRP는 퇴직급여로 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그 수령액을 적립 또는 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이전할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저축계정

9) IRP는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업형 IRP라 함은 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제1항(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에 의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을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것으로 본다.

이다.¹⁰⁾ IRP는 퇴직급여로 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여부는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되, 최종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퇴직소득세를 이연해 주는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IRP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퇴직연금은 2005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의 실질적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금 상당액을 예치토록 하여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을 받거나 중도 해지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그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은 노사가 사전에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의 수준내용을 약정하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연금제도이다. 반면,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은 노사가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하고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 책임하에 운용하며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 성과에 기초하여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연금제도로서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의 불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별도의 개인형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lan)이 있는데, IRP는 노후 생활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퇴직연금과의 통산이 가능한 제도로서 최종 퇴직시까지 퇴직소득 과세의 이연이 가능하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및 법정 퇴직금제도가 재직 중에 적립되는 퇴직급여의 특성을 갖고 있는 반면, IRP는 퇴직시 수령한 퇴직금을 적립하여 관리하는 계좌이다. IRP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본인이 퇴직시에 또는 중간정산을 할 경우 본인의 개인퇴직계좌에 계속 적립할 수 있어서 퇴직금을 은퇴 이후의 생활자금으로 보존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10) 노동부·근로복지공단(공편), 『신진기업복지제도 교육교재』, 2010, 11면.

나. IRP를 활용한 과세이연으로 노후소득 증대

IRP의 가장 큰 장점은 IRP를 활용할 경우 과세이연으로 인한 노후소득 증대의 직접적인 효과가 있게 된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시에 퇴직금을 IRP계좌에 가입하여 퇴직시점을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연금 개시 시점인 만 55세 이전까지는 일반 금융상품보다 중도해지가 까다롭다. 현행 세법상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IRP에 가입하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인출 시점까지 과세되지 않고 이연된다.

또한 IRP는 운용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나 배당은 인출 시점에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는데, 대체로 퇴직소득세가 이자소득세보다 낮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정기예금은 이자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이자소득세(15.4%)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IRP에는 퇴직시점까지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자금운용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대의 편의(benefit)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RP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본인이 퇴직시에 또는 중간정산을 할 경우 본인의 개인퇴직계좌에 계속 적립할 수 있어서 퇴직금을 은퇴 이후의 생활자금으로 보존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과세이연은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킨다. 근로자가 내야 될 세금이 미래 시점으로 연기가 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액만큼 재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이 재직 중일 때의 근로소득세율보다 낮은 것도 과세이연의 한 유인이다. 퇴직소득세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경우 세금부담이 감소하게 되고, IRP의 운용기간이 더 길수록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가 과세이연되어 일시금이 계속적으로 재투자되어 수익이 더욱 커지게 되고 그 운용수익은 저율의 퇴직소득세로 과세된다.

이를 통해 최종 은퇴소득은 더욱 증가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단기간에 퇴직급여가 소진되는 일이 없이 노후자금의 확보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IRP는 퇴직소득보다는 연금소득을 장려하는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것으로 55세 이전의 퇴직소득세를 이연하여 55세 이후의 연금소득으로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전후의 IRA와 IRP의 적용범위 및 주요 특징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IRA와 IRP의 주요 특징

구분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퇴직계좌(IRA)
가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퇴직자) • 근로자(DB·DC형 가입자) 일부 자영업자 	퇴직, 중간정산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를 수령한 자
퇴직자의 급여이전 기능	퇴직시 자동 이전	퇴직일 혹은 중간정산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납입금액	전액 불입	퇴직급여 전액 혹은 퇴직급여의 80%이상 (세전)
인출 및 수령	연금(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일시금 중 선택(중도해지 가능)	연금(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일시금 중 선택(중도해지 가능)
세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통한 세제혜택(퇴직소득세) • 운용수익에 대한 세제혜택(이자소득세 → 퇴직소득세) 	
통산장치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금을 통산하여 은퇴시점까지 적립	
연금수령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 가능, 선택에 따라 일시금도 가능	

※ 출처 :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자료(2012) 참조.

4. 개인형퇴직연금의 종류와 세제 검토

가. 개인형퇴직연금의 종류와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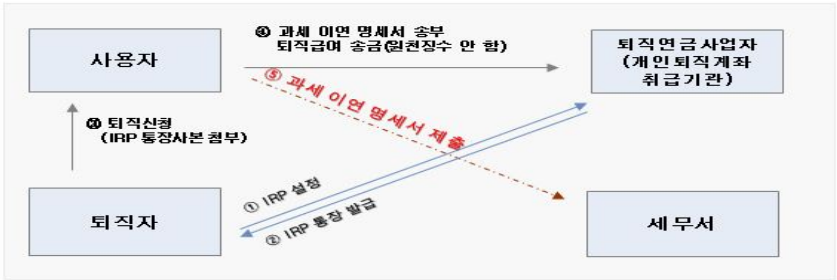
개인형퇴직연금(IRP)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퇴직 IRP’가 있는데 이것은 퇴직급여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시나 이직시 가입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만 퇴직금의 수령이 가능하다. 이것은

퇴직 전 개설이 가능하고 퇴직금 수령 후 60일 이내에만 가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반면, ‘적립 IRP’가 있다. 적립 IRP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본인 부담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하며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연간 1,2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시에는 확정기여형(DC) 자기부담금 및 연금저축 등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15년부터는 추가불입을 통하여 3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었다. 2014년부터 소득공제방식이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되어 연간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이전시 과세이연 형태로는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종류가 있다. IRP는 IRP 가입 시점(퇴직 전, 퇴직 후)에 따라, 그리고 제도 유형(DB형, DC형)에 따라 가입 절차가 각각 달라진다. 퇴직금 지급 전에 IRP에 직접 계좌 이체하여 과세이연 하는 방법으로 <그림 1>과 <그림 2>가 있으며, 퇴직금 지급 후 이전하여 과세 이연하는 방법으로 <그림 3>과 <그림 4>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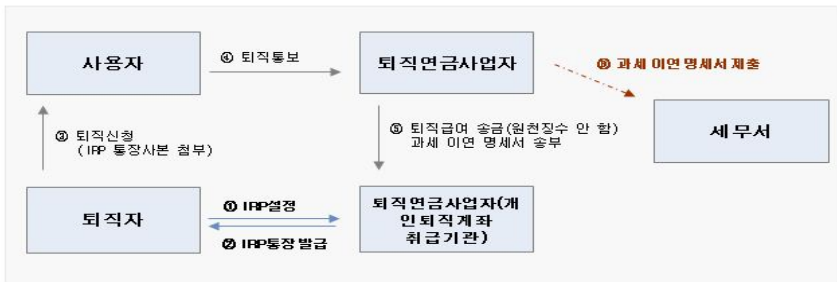
우선, 퇴직 전 IRP 가입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퇴직 예정자는 퇴직하기 전에 IRP에 가입하고자 할 때 퇴직 전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IRP를 설정한다는 것은 IRP 가입에 대한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퇴직 예정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IRP 통장을 수령하고, IRP 통장 사본을 근무지에 제출하면, 기업은 퇴직급여를 퇴직자가 설정한 IRP로 이체하고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퇴직자에게도 통보한다.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은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퇴직 전 IRP 가입 절차시 기업이 IRP로 자금을 직접 이체한 것이므로 실제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1> 퇴직 전 IRP 가입 절차(퇴직금제도, DB)¹¹⁾



한편, DC형 가입자가 퇴직 전에 IRP를 설정하는 경우 기업이 별도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퇴직계좌 취급기관에 퇴직급여를 송금한다. DC형은 DB형과 마찬가지로 자금을 이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발생하지 않는다. 가입자는 퇴직시 DC형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를 퇴직자의 IRP로 이체하고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DC형의 퇴직 전 IRP 가입 절차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퇴직 전 IRP 가입 절차(DC)¹²⁾



11)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퇴직연금 실무해설서』, 한국투자증권, 2010, 257면의 그림을 수정하였다.

12)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위의 책을 참고하여 저자가 수정하였다.

반면, 퇴직 후 IRP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와 환급의 문제가 발생한다. 퇴직 후 IRP에 가입하는 경우 DB형과 퇴직금제도에서는 퇴직급여를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추어 IRP로 입금하면 기 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는다. 퇴직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 개인형퇴직연금신고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과세이연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퇴직소득세를 차감 납부하거나 환급신청을 한다. 퇴직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를 설정하여, 수령한 일시금(세전 금액)을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입금하여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IRP 통장을 수령한다. 퇴직자는 개인형퇴직연금신고서와 IRP 통장 사본을 퇴직 전 직장에 제출하면, 전 직장에서는 기 징수한 원천징수세액 중에서 IRP에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재산정하여 퇴직자에게 환급한다.

기업은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환급하여야 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또한 기업은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DB형 퇴직연금가입자의 퇴직 후 개인퇴직계좌 가입 절차는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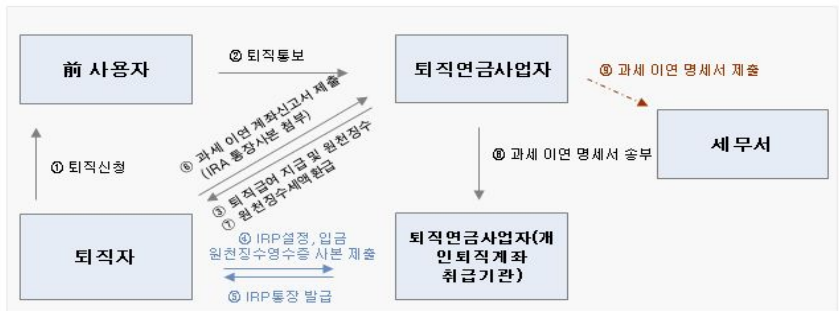
<그림 3> 퇴직 후 IRP 가입 절차(퇴직금제도, DB)¹³⁾



13)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앞의 책, 254면의 그림을 수정하였다.

퇴직금제도가 DB형에서는 원천징수 세액의 환급의 의무자는 사용자가 담당하고 있으나, 아래의 DC형 가입자가 퇴직 후 IRP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의 의무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담당하고 있다. 퇴직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를 설정하여, 수령한 일시금을 60일 이내에 입금하고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IRP 통장을 수령한다. 퇴직자는 개인형퇴직연금신고서와 IRP 통장 사본을 DC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기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퇴직자에게 환급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DB형과 동일하게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아래의 <그림 4>는 DC형의 퇴직 후 IRP 가입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퇴직 후 IRP 가입 절차(DC)¹⁴⁾



나. 퇴직소득세제 관련 현행 규정의 검토

현재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관에서 언급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46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14)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앞의 책, 255면의 그림을 수정하였다.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 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 ④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46조의2에는 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47조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언급하고 있으며, 별도로 소득세법 제148조에서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제146조의2 【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함에 따라 그 퇴직연금계좌에서 가입자가 실제로 지급받을 때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금액(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소득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2014년 12월 31일에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2014년 12월 31일에 해당 소득이연퇴직소득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지급받아 즉시 해당 퇴직연금계좌에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받아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보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제146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Ⅲ. 개인형퇴직연금(IRP) 시행에 따른 과세상의 문제점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의 시행에 있어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IRP의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 IRP가 최근 급성장을 하였지만, 가입자의 제한, 가입자의 추가납입금지, 제약 없는 중도 해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어 IRP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가입단계의 문제점

가. 가입제한 제한의 문제점

개인형퇴직연금(IRP) 시행상의 문제점으로 가입자와 가입제한의 제한으로 인한 활성화가 지연된다는 면이 있다. 현행 법조문에서는 개인형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에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와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¹⁵⁾

최근 직장 이동이 빈번하여 평균 근속기간이 짧아지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실시로 인하여 퇴직금이 노후 생활보장이라고 하는 본연의 목적에 사용되지 못하고 소액의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자

15)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가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기 명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IRP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조문상에서 IRP의 가입자원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 퇴직금 재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납입재원을 한정하고 있다. 게다가 근로자의 IRP에 대한 추가납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IRP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개인형퇴직연금의 가입재원을 극히 제한하고 있어서 가입단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여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주된 원인은 IRP의 가입재원이 퇴직시에 받는 퇴직급여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가 노후를 위한 대비 자금을 IRP를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도 추가 납입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나. 특수직역연금의 IRP 시행에 따른 문제점

한국채권연구원(2009)의 노동부 연구용역에 의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 제2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하면서 소상공인,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특수직역연금 대상자(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도 본인이 원하면 IRP를 설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¹⁶⁾ 특히 소득기반이 고르지 못한 자영업자도 안정적인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IRP 가입은 제도 시행상의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통해 IRP 저변 확대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IRP의 역할과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킨 것은 틀림없다. 그렇지만, IRP 제도 시행에 있어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인 공무원, 사립학교교

16) 노동부, 『개인형퇴직연금 도입효과 및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 용역보고서, 2009, 21면.

직원, 군인에게도 IRP를 가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IRP의 수급요건을 살펴볼 때 IRP는 일시금과 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이 가능하며 연금을 선택하려면 55세 이상의 연령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 특수직역연금가입자의 경우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연령이 최근 65세로 연장되어 비교적 민간기업 가입자에 비하여 직장의 안정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볼 때 수급연령상의 제약요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미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정년이 되어 연금공단에서 퇴직급여(일시금과 연금)를 수령하게 되므로 IRP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령층은 일시금보다는 연금을 선호하고 있으며, 실제 퇴직시에 연금 선택이 일시금 선택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¹⁷⁾

그런데 노후자금을 위해 수령한 금액을 다시 IRP에 가입한다는 것은 노후의 생활자금 확보를 위해 태동한 IRP 제도의 본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으며, 은퇴시점인 특수직역연금을 수령한 시점에서 퇴직소득세를 과세해야 할 것을 IRP 수령시기를 이연하여 이연과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의 가입자가 65세가 되어 정년이 되자 퇴직수당으로 1억원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받았다고 할 경우 퇴직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IRP에 가입하여 70세에 일시금을 수령한다고 할 경우 현재의 세금을 그대로 이연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세금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더욱이 특수직역연금의 가입자에 대한 IRP 가입에 대하여는 IRP 제도 마련 당시에는 고려되지 아니한 사항이다. 연금소득 과세제도의 시행은 200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퇴직연금제도의 시행 시점은 2005년 12월이다. 2002년 연금 소득과세가 태동한 시점부터 IRP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제도 시행당시에 공적연금 가입자에 대하여는 IRP 가입 여부에 대하여 검토되지 아

17)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퇴직시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별도로 수령한 퇴직수당은 IRP에 가입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니하다가 2009년에 이르러 비로소 국세청의 질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에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 것이다. 질의회신에 의하면 공무원 등도 IRP 가입이 가능한 것이다.¹⁸⁾

IRP 제도의 근본적인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는 환급의 문제로 인하여 제도시행을 하는 연금공단이나 퇴직연금운용기관에서 매우 번잡한 과세행정 절차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매월 10일에 원천소득세를 신고하게 될 경우 매월 환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환급과 정산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특수직역연금은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를 이미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였으나, 추후에 개인형퇴직연금에 퇴직급여를 공무원이 이체한다고 할 경우에 환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퇴직교직원이 1억원의 퇴직일시금을 수령하고 3년이 경과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3년 후에 형벌로 인하여 감액되었거나 추가적인 감액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액의 반으로 감액된다. 이때 교직원이 IRP에 가입하였다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의 반액을 3년 후에 환급신청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수직역연금은 이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다.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문구에 따른 문제점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통상적으로 3월과 9월에 신규임용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퇴직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3월에는 퇴직자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난후 60일 이내에 IRP에 가입시 연금공단은 해당 퇴직소득세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후에 해당 금액을 환급해주는 대신에 미리 환급해주고 국세청에 추후 환급신청을 한다. 정부에서는 연금공단에서 납부할 세액 발생시에 환급금을 차감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4월 이후 퇴직자가 받

18)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검토는 당초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976(2009. 4. 22.)호에 의하여 검토가 시작되었으며, 국세청 법규과-638(2009. 12. 16.)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2010. 3. 29)호에 의해 IRP 가입이 가능토록 되었다.

생시에만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와 차감하는 되는데 이러한 면은 소득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감납부가 조기에 해결이 가능하지만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차감납부가 다소 곤란하다. 가령, 서울 강남에 직장이 있는 근로자가 은퇴 후 부산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면, 퇴직시 강남세무서에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주소지인 부산관할 구청에 납부하게 된다. 지방소득세의 차감납부는 향후 부산지역의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퇴직시에만 발생하게 되어 차감납부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연금공단은 퇴직소득 선납의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규정에서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문구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세부담의 불확정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잦은 환급과 재정산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소득세 선납의 문제가 발생하는바, 퇴직소득세를 환급할 경우 선환급하고 차후에 차감납부를 해야만 한다. 이처럼 퇴직 후 60일까지의 문구로 인하여 세부담의 확정이 되지 아니하여 세금 환급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¹⁹⁾

2. 운용단계의 문제점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운용단계 시행상의 문제점으로 중도해지 가능으로 인한 활성화가 미흡한 점을 들 수 있다. 국내 IRP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의 강화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IRP 제도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점의 하나로는 IRP 제도가 별다른 제약 없이

19) 김수성·성종훈, “퇴직소득 세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4권 제2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4. 8., 101~102면.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이며, 이러한 점은 통산 장치로서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다. IRP는 DC형과 마찬가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적립금의 100%까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중도인출 신청서와 중도 인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IRP는 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 중도해지 요건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쉽게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아쉽게도 IRP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IRP에 적립할지 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퇴직연금 제도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강제이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적연금에 대하여는 IRP에 대한 강제적인 이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 급부단계의 문제점

가. 개인형퇴직연금 계좌 신고 및 환급 절차의 문제점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급여 지급단계로 시행상의 문제점은 DB형 사업자 및 연금공단의 환급 의무 부담 증가를 들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 계좌 신고 및 환급 절차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특수직역연금의 IRP 시행에 따른 환급의 문제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환급하는 문구에 기인한 것이다. IRP를 시행함에 있어 DB형의 경우에 퇴직 후 IRP를 가입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 환급 및 지급에 관한 세무 업무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환급의 문제는 특수직역연금공단과 그 밖의 민간기업의 사업장에서 공히 발생되나, 국민연금공단은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의 급여는 일시금의 지급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오로지 연금으로만 지급하고 있어 연금에 대한 선택이 불가능하다. 노령연금의 종류로는 감액 노령연금, 조기 노령연금, 재직

자 노령연금, 특례 노령연금, 분할연금 등이 있으며, 노령연금을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일시금은 국민연금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으로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연금수령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일시금의 성격이 아니다. 이때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begin{aligned} \text{과세대상 일시금} &= \text{총 수령액} \times (\text{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월수} / \text{총 납입월수}) \\ &\quad - \text{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기간 중 소득공제 받은 금액} \\ &\quad \text{을 초과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 \end{aligned}$$

반면,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퇴직소득세액을 산출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납부를 하였으나, 퇴직자가 IRP 계좌에 퇴직금 수령 후 60일 이내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세를 재산정하여 환급조치를 해야 한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개인퇴직계좌에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이연으로 인한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동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근로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퇴직소득 과세이연을 신청할 거주자는 관련 서류를 발급받고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회사에 퇴직소득과세이연 신청을 하면 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각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 과세이연명세서를 작성하여 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후 납부할 수 있다.

나. 연금계좌 간 이체시 인출로 보는 경우의 해석상 논란의 문제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연금계좌 간 이체시 인출로 보는 경우를 조문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40조의3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①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인출한 것으로 본다. 우선,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과세제외 금액”을 먼저 인출한 것으로 보고 두 번째, 이연퇴직소득 세 번째는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그리고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의 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이내의 연금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제1항 제3호 중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본다. 한편, 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은 원금이 제1항에 따른 인출순서와 반대의 순서로 차감된 후의 금액으로 본다.

그런데 현행 법 조문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 퇴직자는 소득이연방식에 따라 과세정보를 관리하게 되므로 급여의 일부금액을 이체한 경우에는 과세정보의 관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금액을 이체시 인출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동 조문에 의하면 DB형 또는 퇴직금제도에서 과세이연계좌에 입금 또는 이체시에는 여러 개의 IRP계좌를 개설하여 금액을 나누어 가입하여도 과세이연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DC형 및 IRP계좌에서 DC형이나 IRP계좌로 이전시에는 과세이연을 위해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4 제1항 제3호의 인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전액을 이체하여야만 하므로 제도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특수직역연금의 추가 불입분 세액공제 미적용의 문제점

현재 국민연금가입자만 퇴직금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퇴직금을 보유한 경우에는 추가불입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자영업자 및 특수직역연금 제도 가입자의 경우에는 추가불입을 하도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2015년 법 개정을 통하여 자영업자도 2017년부터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적립 유도를 통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개인의 퇴직연금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12%) 한도를 연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도의 확대는 국민연금가입자인 민간 사업장의 종사자만 가능하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에게는 추가불입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가 차별하게 된 이유로는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현행의 제도적 제약 때문이다. 현행 세법의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상 퇴직연금계좌로 명기하고 있다. 여기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DC형 퇴직연금 또는 IRP 계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12%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지방소득세를 감안한다면 불입액의 13.2%를 세액으로 환급받는 것이다. 현행과 같이 IRP 추가 불입에 대한 문제는 종전 연금계좌(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에 적용하던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금액에 대해 2015년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하는 것으로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IV. 개인형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최근 근로자들의 잦은 직장 이동으로 인한 노후자금의 조기 소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장을 이동하더라도 퇴직급여를 은퇴 시까지 관리 또는 운용할 수 있는 IRP라는 퇴직(일시)금 통산의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퇴직일시금 급여액이 퇴직 후 60일 이내에 결정됨에 따라 전술한 바와 같이 퇴직소득세 환급과 정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후생활 자금확보뿐만 아니라 IRP의 가입 유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보장을 위한 IRP 제도의 세제혜택 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IRP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방안

가. 추가 납입분 세제 지원을 통한 IRP 활성화 유도

IRP 제도의 활성화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세제지원을 통해서 가능하다. 미국에 비하여 세제혜택이 적은 우리나라의 IRP 제도는 현재보다 더욱 강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IRP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IRP 계좌의 세금 혜택을 감소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가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추가납입을 통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DC형 퇴직연금이나 기업형 IRP에 가입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하는 법정 부담금 외에 자기 부담으로 추가적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DB형은 추가납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DB형에서도 DC형과 같은 추가납입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은 IRP에 보다 적극적인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이를 참조하여 IRP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²⁰⁾ 미국의 사례처럼 누구나 추가납입이 가능

20) 미국은 IRA에 보다 적극적인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아 소득세율이 높은 경우라면 Traditional IRA가 유리한 반면,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당장의 세금 혜택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Roth-IRA가 유리하다. 미국 IRA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Traditional IRA와 Roth-IRA가 있는데, Traditional IRA는 부담금을 납입하는 시점에 세제혜택을 받고 후에 적립금을 찾았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Roth-IRA는 부담금 납입시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없으나, 후에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맞게 인출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전체 금액이 면세 혜택을 받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다(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IRA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강화 필요』, 2010. 참조).

하다면 IRP 연금시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²¹⁾

나. IRP 해지시 엄격한 벌칙 부과

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소득세 비과세 또는 소득세 과세이연 등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면서 은퇴 후의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IRP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퇴직한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적이면 장기로 가입하여 은퇴 후의 노후자금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IRP 해지시 엄격한 제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개인연금 제도에서는 중도 해지시 벌칙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6월 개인연금제도(개인연금저축)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그 후 2000년 12월에 연금제도에 대한 과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1994년에 도입된 개인연금저축과는 다른 새로운 개인연금상품(연금저축) 제도를 마련하였다. 연금저축은 제도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중도해지(일시금 수령)시 패널티(벌칙)를 부과하였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납입 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2%,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되며, 특히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2.2%, 지방소득세 포함)가 함께 부과되어 중도해지(일시금 수령)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이 개인연금저축에서보다 훨씬 크게 되었다. 당시 연금저축에 벌칙을 적용하게 된 것은 개인연금저축에 적용한 과세 체계가 너무 관대한 탓에 중도해지 건수가 많아 계약 유지율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IRP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부과된 벌칙의 규정과 같이 IRP에도 엄격한

21) 미국에서는 1980년 개혁안을 통해 70.5세 이하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IRA에 추가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만큼 세금 공제 혜택을 주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1982년부터 1986년 사이에 IRA의 적립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효과를 얻었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IRA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강화 필요』, 2010. 참조).

별칙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IRP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IRP는 공적연금·퇴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어 다층 노후보장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IRP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세제혜택의 부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IRP 운용과정에서 중도해지를 지속적으로 허용하고 별도의 제재 없이 계속적으로 중도해지를 허용한다면 정작 노후에 필요한 노후소득의 재원은 확보되지 못한 채 IRP의 본연의 목적인 노후 생활자금의 확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와 같이 IRP 해지에 따른 엄격한 세제상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IRP 중도 해지에 따른 무분별한 자금의 인출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²²⁾

2. IRP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

가. 퇴직시 IRP 가입 여부 결정

IRP 가입과 관련하여 가입 여부를 퇴직 전에 파악하여 관련 서류를 징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IRP에 실질적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환급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체 퇴직급여 중에서 개인퇴직계좌에 이체된 금액에 대한 환급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퇴직급여 지급시 IRP 가입자를 미리 파악하여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DB형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금 지급일 전까지 과세이연명세서에 이체가 가능한 금액을 기입하여 과세금액을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사전에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절차상의 변화로 인하여 더 이상의 세부담 신고 및 환급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의 과세행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담 환급에 따른 세무행

22) 문성훈·김수성, “고령화 사회의 연금 수급 선택 유인을 위한 연금소득 과세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제15권 제6호, 한국세무학회, 2014, 171면.

정 비용을 대폭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소득 산출시에 미리 퇴직시점에 수령 가능한 퇴직급여액(분할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을 파악하고, 이러한 금액 중에서 ‘이연 가능한 퇴직급여액’을 파악하여 이 금액에 대하여만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사전결정제의 방법은 소득세 환급 및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름으로 인한 환급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나. 원천징수의무자 변경을 통한 IRP 퇴직소득 환급

원천징수(tax withholding)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공제)하여 대신 납부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원천징수에 있어서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납세의무자와 이를 신고·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서로 다르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퇴직 후 IRP에 가입할 경우 환급을 퇴직연금사업자가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RP에 있어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의 역할도 중요하며, DB형의 경우에도 DC형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를 52개의 퇴직연금사업자로 변경하고자 한다.²³⁾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IRP 가입을 권유할 경우 퇴

23) 2014년 말 현재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금융회사는 52개이다. 퇴직연금사업자로서 운용관리업무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곳은 은행이 15곳, 생보사는 14개, 손보사는 7개, 증권사는 15개사,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있다. 이때 퇴직연금사업자는 외국계 은행 등은 제외하고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기관만이 퇴직연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자산운용회사에 한함)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http://pension.fss.or.kr/fss/psn/main.jsp>).

직소득 환급에 대한 금융컨설팅 서비스 차원에서 본인이나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신하여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다. 퇴직연금사업자는 IRP의 가입 및 운용 전반에 대하여 관여하여 IRP가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IRP 계좌에 대하여 연금소득이나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관리하여야 하므로, IRP 가입시에 환급의 업무를 하게 되면 향후 원활한 후속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²⁴⁾

반면, IRP 가입에 대하여는 개인의 선택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를 본인 책임하에 국세청에 환급을 직접 신청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모색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자와 후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와 환급신청자가 다름으로 인하여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 강제규정 적용을 통한 노후생활자금 마련

IRP 도입으로 인하여 은퇴시점 이전에 받은 퇴직금을 노후생활 자금 확보의 본연의 목적에 사용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할지 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재원의 일부분은 생활자금으로 전용되어 버리기 쉬운 면이 있다.

24) 근로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보험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한다). 그 밖에 위의 기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IRP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도 퇴직 또는 이직시에 받는 퇴직금을 개인형 IRP로 강제 이전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IRP가 제대로 된 노후의 소득보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은퇴시점까지 꾸준히 IRP를 통해 납입된 퇴직금을 운용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퇴직시 수령한 일시금 전액을 IRP계좌에 불입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노후자금의 누수를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IRP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장의 생활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불입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자칫 노후 자금 보장을 위하여 IRP에 가입하고 나면 여유자금의 부족으로 현재의 생활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IRP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폐단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연금일시금이 IRP계좌에 자동이전 되도록 법 개정을 하였으나, 공적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일시금에 대하여는 자동적으로 IRP계좌에 이전되도록 하지 않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연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제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일시금에 대하여도 강제적으로 IRP계좌에 이전하게 된다면 연금으로 선택하려는 유인은 커지게 될 것으로 본다. 일단은 IRP에 강제이전하게 되고 그 후에 생활자금이나 노후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퇴직신청을 하게 된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퇴직교직원의 입장에서도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상품에 자동가입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 매우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2012년 7월 26일부터는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퇴직 및 이직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IRP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으면서 은퇴시점까지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IRP는 퇴직금의 IRP로 의무이전을 통하여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 재원을 보존하고, IRP의 가입 확대를 통해 퇴직연금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특수지역연금에서 제공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하여 과세이연계좌로의 의무이전은 일시금 선택

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연금으로 선택하게 될 경우에는 사망 시까지 매년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되겠지만, 일시금으로 선택하여 IRP로의 강제이전을 통한 연금선택은 퇴직자가 원하는 기간만큼을 연금으로 선택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3. IRP 가입 유도를 위한 세제 개선사항

가. 과세이연 환급 관련 법령 정비

IRP의 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 60일 이내에 가능하나, 2010년 6월 8일부터 새롭게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IRP에 가입이 허용되어 이제는 공적연금제도에서도 과세이연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액을 불입하지 못하고 80% 이상을 개인형퇴직연금에 환급함에 따라 일부 퇴직금은 생활자금으로 소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공적연금을 통한 IRP의 가입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려고 하는 당시에는 검토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공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시 수령한 퇴직금에 대하여도 일반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였다. 이것은 공적연금제도의 퇴직일시금에 대하여도 과세이연이 되도록 제도적인 기초를 마련하여 퇴직일시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이익을 증가시키려고 했던 금융기관의 정책적 로비를 통하여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비록 법 규정에는 없지만 국세청의 질의 및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을 통하여 공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에도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제도 도입 당시에는 퇴직금으로 수령한 전액을 IRP에 이연하도록 하였으나 법 개정시에 80%로 수정함에 따라 퇴직소득과세의 환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금액의 과세이연에 따른 문제

는 퇴직소득세의 환급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여 과세신고 문제를 어렵게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2012년 개정세법은 이와 같은 퇴직소득 재산정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이연에 대한 퇴직소득세 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IRP와 관련하여 해당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바, 관련 법령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한다.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 (중략) ……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지급받은 날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③·④ (생략)

⑤항 추가 :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①항과 같이 지급받는 퇴직급여액 전액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지 않은 경우와 ②항과 같이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을 사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신하여 퇴직소득과 해당 지방소득세를 관련 기관에 환급 신청하여야 한다.

⑥항 추가 :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①항과 같이 지급받는 퇴직급여액 전액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할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이연계좌로 바로 계좌가 이체될 수 있도록 한다.

2011년 6월 3일 소득세법 개정에 의하면 당초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는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불입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2012년 7월 24일 개정시 관련 용어가 변경되었다. 2012년 개정세법에서는 시행령 제42조에 대한 전체 규정을 삭제하였고 2013년 2월 15일에 전체

적으로 개정을 하였다. 그러므로 2013년 1월 1일에 개정된 현행 소득세법 제146조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해당 법조문에 제5항과 제6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적연금제도와 관련한 IRP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과거에 60일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IRP에 가입하지 못한 공무원 등을 위해 IRP의 추가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인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때 금융기관에 과세이연계좌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퇴직소득에 대한 환급과 신청절차를 대행해 줄 필요가 있다. 공무원 등이 IRP에 가입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바, IRP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IRP에 가입하지 못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IRP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나. 연금계좌 간 이체시 인출로 보는 경우의 명확한 해석 필요

동법 시행령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 퇴직자의 이연퇴직소득의 일부이체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201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에 대해서는 세액이연방식으로 과세정보가 관리되어 일부금액을 다른 연금계좌에 이체하여도 과세정보 관리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부 이체시에도 과세이연을 허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퇴직급여 제도 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1항 제3호는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1항 제3호에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를 2012년 12월 31일 이전 퇴직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이연퇴직소득의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연금계좌의 이체】 ①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이하 이 조에서 “이체계좌”라 한다)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2.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 퇴직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이연퇴직소득의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다. 특수지역연금 가입자 추가불입 세액공제 적용

현재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퇴직금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공무원을 비롯한 특수지역연금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퇴직금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퇴직수당이라고 하는 별도의 퇴직금과 유사한 제도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이 아닌 연금법상에서 지급하는 퇴직수당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 가입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이 특수지역연금제도 가입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다.

2014년 연말정산에서 보여준 연말정산 파동을 교훈삼아 세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특수지역연금 가입자에게도 본인이 추가 불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12%) 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 것은 민간기업 가입자에게만 유리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법령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제1항 제2호 라목에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①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 가. ~다. (생략)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 라.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설정하는 계좌

V. 결 론

최근 희망퇴직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기업이 늘면서 퇴직자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퇴직연금 상품의 하나인 개인형 퇴직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DB형, DC형, IRP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IRP는 근로자가 중산정산을 받거나 실제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자기 명의 계좌로 적립해 연금 등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통산장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IRP에 가입하게 되면 조기에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나 중간정

산을 받은 근로자도 은퇴 후의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노후를 대비한 퇴직연금의 대체수단으로 IRP에 가입하게 되면 퇴직 전에 가입한 퇴직연금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RP의 가장 큰 장점은 퇴직금으로 받은 일시금을 IRP 계좌에 적립하여 은퇴시점까지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퇴직시점에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IRP에 가입하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인출 시점까지 이연되게 된다. 또한 운용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도 인출 시점에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는데, 대체로 퇴직소득세가 이자소득세보다 낮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또한 IRP는 이자소득세가 운용 도중에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자금운용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IRP 제도 운영상에 몇 가지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IRP 시행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IRP에 내재된 문제점을 토대로 IRP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보고 개선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IRP 제도는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IRP 계좌에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 당시에는 일시금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를 산출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후일에 60일 이내에 IRP에 가입할 경우 언제든지 퇴직소득 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 퇴직소득세의 세금 신고 납부가 확정되지 못하고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은 커지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가 퇴직시점에 IRP 가입 여부를 미리 결정토록 하고 IRP 가입 여부를 결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시금 중에서 IRP에 가입할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환급의 문제와 정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둘째, IRP에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적립하여 과세이연을 받고자 할 때 기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의 환급과 정산의 문제가 발생하는바, DB형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DB형의 원천징수의무자를 DC형의 원천징수의무자와 동일하게 퇴직연금사업자로 하고자 한다. 현행법상 DB형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민간기업이나 특수직역연금공단이 원천징수의무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수정하여 현재 IRP 제도를 운영하는 52개의 퇴직연금사업장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셋째, 보다 높은 IRP 가입을 위해 IRP 해지시에 벌칙을 부과하여 IRP가 지속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며, IRP 가입에 대하여는 선택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을 적용하는 등 IRP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내의 IRP는 퇴직연금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은퇴 후 노후생활 자금 확보에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어 중요성이 더해질 것으로 본다. 정부는 IRP의 가입유도와 활성화를 위하여 과세이연이라고 하는 혜택을 부여하기는 하였으나, 지금의 정책으로는 IRP가 실질적인 노후보장수단으로서 자리매김 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면이 남아 있다. 향후 IRP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세제혜택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IRP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세제혜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參 考 文 獻

- 국세청, 『퇴직소득 원천징수 안내』, 국세청, 2006.
- 공무원연금공단, 『공적연금 과세실무 처리요령』, 공무원연금공단, 2006.
- 김수성·성종훈, “퇴직소득 세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4권 제2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4.
- 김진수·김재진, 『퇴직연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7.
- 노동부·근로복지공단(공편), 『선진기업복지제도 교육교재』, 2010.
- _____,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 매뉴얼』, 노동부 근로기준국 퇴직급여보장팀, 2007.
- _____, 『개인형퇴직연금 도입효과 및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 용역보고서, 2009.
- 류건식·이상우,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KIRI Weekly, 보험연구원, 2009.
- 문성훈, “펀드 및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 개선방안”, 2010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2010.
- 문성훈·김수성, “고령화 사회의 연금 수급 선택 유인을 위한 연금소득 과세 개선 방안”, 『세무와 회계저널』제15권 제6호, 한국세무학회, 2014.
- 박여영, 『IRA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강화 필요』,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2010.
- 방하남·구건서·조동진·박규서·이영하, 『퇴직연금』, (주)중앙경제, 2006.
- 보험개발원,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보험개발원 CEO REPORT, 2008.
- 이진섭, 『개인형퇴직연금(IRA) 활성화를 위한 방안』,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2010.
- _____, 『개인연금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IRA 개선방안』,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연구소, 2010.
- 최형준, 『퇴직연금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2009.
-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퇴직연금 실무해설서』, 한국투자증권, 2010.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http://pension.fss.or.kr/>)
-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irs.gov/>)

<Abstract>

**A study of the Problem & Activation Method of
Individual Retirement Plan**

Kim, Su Sung* & Cha, Myung Ki**

IRP is a retirement pension of early retirement pension to retire the company to an employee's join benefiting from the continued effect of a retirement pension on the alternative means to do that will. IRP to be deferred until retirement income taxation is to decide when to cash in when they get into it that have a point. On the other hand, Retirement income collection and reimbursement for the problems and the like are constantly takes place here. Retirement income withholding agent's tax and reimbursement of tax burden in the cooperation is bound to be. Retirement income withholding of reimbursement for the problem is db the inverse Fund Corp. of private companies and other business all on the field of type businesses shall apply.

This study like this, but it is a problem that was based on checks and tested the overall problem in the system undertake initiatives on going to present, as follows. First of all, should modify the law. Retirement within 60 days after the retirement income to sign onto irp creating problems of the refund and became a much heavier burden. Second, to readjust the scope of the withholding agent. Third, IRP account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reinforcement the additional tax regulations in order to activate your account.

This study helps IRP to implement the system of withholding occurs in the reporting requirement and is susceptible to the question of the reimbursement. So it's all about be on a measure that would suggest to you. This study was discussed a retirement pension and personal pension, as well as public pensions. It includes the institutional problems and tax reform plan to bury the significant because we believe.

▶ **Key Words** : retirement pension, public pensions,
individual retirement plan, IRP, individual retirement income,
withholding tax, private pensions, DC, DB

* First author, Korea Teachers Pension Fund, Ph. D. Tax administration

** Corresponding author, CTA, Ph.D. Candidate, School of Business, Sogang University